

[별지 제59호의9서식의(가)] (명부의 표지) <개정 2011.7.28>

년 월 일 실시 ○○선거

(재외선거인명부) · (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)

(○○구 · 시 · 군)

작성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열람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확 정 : 년 월 일

○○시 · 도 ○○구 · 시 · 군

(○책 중 ○권)

(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) · (○○구 · 시 · 군의 장) 인

[별지 제59호의9서식의(나)] (재외선거인명부) <개정 2015.12.24.>

등재 번호	공 관 명	한글 성명	대한민국 최종주소지	재외 투표 접수 일시	투 표 용 지 수량인	비 고
		영문 성명				
	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등재번호	생년월일 (성 별)	등 록 기 준 지			

주: 1.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방법

가. "등재번호"란은 다음과 같은 대륙별·국가별·공관종류별·공관명 순서대로 각 재외투표관리관이 작성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 명부 등재번호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.

- (1) 대륙별 : 아주, 미주, 구주, 중동, 아프리카 지역순으로 기재한다.
- (2) 국가별 : 국가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기재한다.
- (3) 공관종류별 : 대사관·총영사관·분관·출장소순에 따라 기재한다.
- (4) 공관명 : 공관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기재한다.

나. 그 밖의 사항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.

다. 뒷란과 동일한 내용이 계속될 때에는 "상동" 또는 "/"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. 단,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.

라. 재외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(袋綴)하여 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도장을 찍는다.

2. 재외선거인명부의 수정방법

가. 이의신청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"비고"란에 적고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도장을 찍는다.

나.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전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·사망한 사람·이중으로 올라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두 줄로 삭제하고, 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그 부분만 두 줄로 삭제하되, 각각 "비고"란에 그 사유(선거권이 없는 자·사망자·이중등재자·오기)와 연월일을 적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도장을 찍는다.

다.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·사망한 사람·이중으로 올라 있는 사람·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하거나 동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"비고"란에 기재한다.

[별지 제59호의9서식의(다)] (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) <개정 2015.8.13.>

등재번호	접수기관	한글 성명	대한민국 주소	국외부재자투표 접수일시	투표 용지 수량인	비고
	접수기관 등재번호	영문 성명				
		생년월일 (성 별)				

주: 1.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방법

- 가. "등재번호"란은 국내 선거인명부 등재순(투표구별 주소의 건물번호순, 통·리·반순, 선거인 성명의 가·나·다순, 생년월일)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.
- 나. "접수기관"란은 구·시·군, 공관명을 기재한다.
- 다.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"비례대표 선거권자"라고 기재한다.
- 라. 그 밖의 사항은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.
- 마. 뒷란과 동일한 내용이 계속될 때에는 "상동" 또는 "〃"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. 단,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.
- 바.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(袋綴)하여 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구·시·군의 장의 도장을 찍는다.

2.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수정방법

- 가. 이의신청·불복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"비고"란에 적고, 구·시·군의 장의 도장을 찍는다.
- 나.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전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·사망한 사람·이중으로 올라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두 줄로 삭제하고, 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그 부분만 두 줄로 삭제하되, 각각 "비고"란에 그 사유(선거권이 없는 자·사망자·이중등재자·오기)와 연월일을 적고 구·시·군의 장의 도장을 찍는다.
- 다.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·사망한 사람·이중으로 올라 있는 사람·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하거나 동 사실을 구·시·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"비고"란에 기재한다.

[별지 제59호의9서식의(라)] (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) (규칙 제136조의8제2항·제136조의9제2항 관련) <신설 2010.6.28>

(1) 이 (재외선거인)·(국외부재자신고인)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
 월 일까지 작성하고 ○책으로 (분철)작성하였음.

(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)·(○○구·시·군의 장) 인

(2) 이 (재외선거인)·(국외부재자신고인)명부는 년 월 일까지 (○○장소
 와) (중앙선거관리위원회)·(○○구·시·군)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게 하
 였음.

(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)·(○○구·시·군의 장) 인

(3) 이 (재외선거인)·(국외부재자신고인)명부는 년 월 일에 확정되었음.

(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)·(○○구·시·군의 장) 인

- 주 : 1. 재외선거인명부의 경우 “(2)항”의 “(○○장소와)” 는 작성하지 아니한다.
 2. (3)항은 명부의 이의신청·불복신청 또는 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
 라 추가로 명부의 확정시 끝부분에 기재한다.